

구민을 편하게 경제를 활기차게 남동을 새롭게

등록번호	체육진흥과-10690
등록일자	2024. 10. 25.
결재일자	2024. 10. 25.
공개구분	대국민 공개

주무관	생활체육담당	체육진흥과장	행정국장
장예림	김성만	한상호	전결 2024. 10. 25. 최민영
협조자			

저소득 유·청소년 및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

202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계획



체육진흥과
[생활체육팀]

202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계획

국장 전결

가.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

- 저소득층 유·청소년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 제공으로 체력향상, 건강증진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
- 장애인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,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기여

I

추진근거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, 제22조제1항제11호

- 제16조(여가 체육의 육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·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22조(기금의 사용 등) 제1항 제11호(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)

- 장애인차별금지법* 제25조(체육활동의 차별금지)

*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
-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-5539(2024.10.18.)

-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-3938(2024.10.11.)

-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이용권팀-1767,1768(2024.10.18.)

- 인천광역시 체육진흥과-14603(2024.10.22.)

- '202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전국동시신청 및 선정계획 알림'

II

사업개요

□ 사업일정

- 신청기간 : 2024. 11. 8.(금) ~ 11. 29.(금) ※ 전국동시신청
- 선정기간 : 2024. 12. 2.(월) ~ 12. 12.(목)
- 지원기간 : 2025. 1월 ~ 12월

□ 지원내용 및 대상

○ 스포츠강좌이용권 (1,868명)

구분	지원내용 및 대상
지원 내용	○ 지원 : 1인당 월 10만5천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(복수강좌) ○ 기간 : 연간 12개월 - 201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과 중복수혜 가능
지원 자격	○ 연령 : 5~18세 저소득층 유·청소년 (2007.1.1.~2020.12.31.) - 5~18세 저소득층 장애인은 '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'이용 ○ 자격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* * 차상위 자활근로·장애·본인부담경감·확인서 발급·법정 한부모가족 - 경찰청 추천 학교·가정·성폭력 등 범죄피해 가구

○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(272명)

구분	지원내용 및 대상
지원 내용	○ 지원 : 1인당 월 11만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(복수강좌) ○ 기간 : 연간 12개월 - 201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과 중복수혜 가능 - 장애인의 원활한 강좌지원을 위해 보호자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1인당 월 11만원 내 보호자 1인을 포함하여 지원 가능(보호자 별도 수강 불가)
지원 자격	○ 연령 : 5~69세 장애인 (1956.1.1.~2020.12.31.) ○ 자격 :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

□ 사 업 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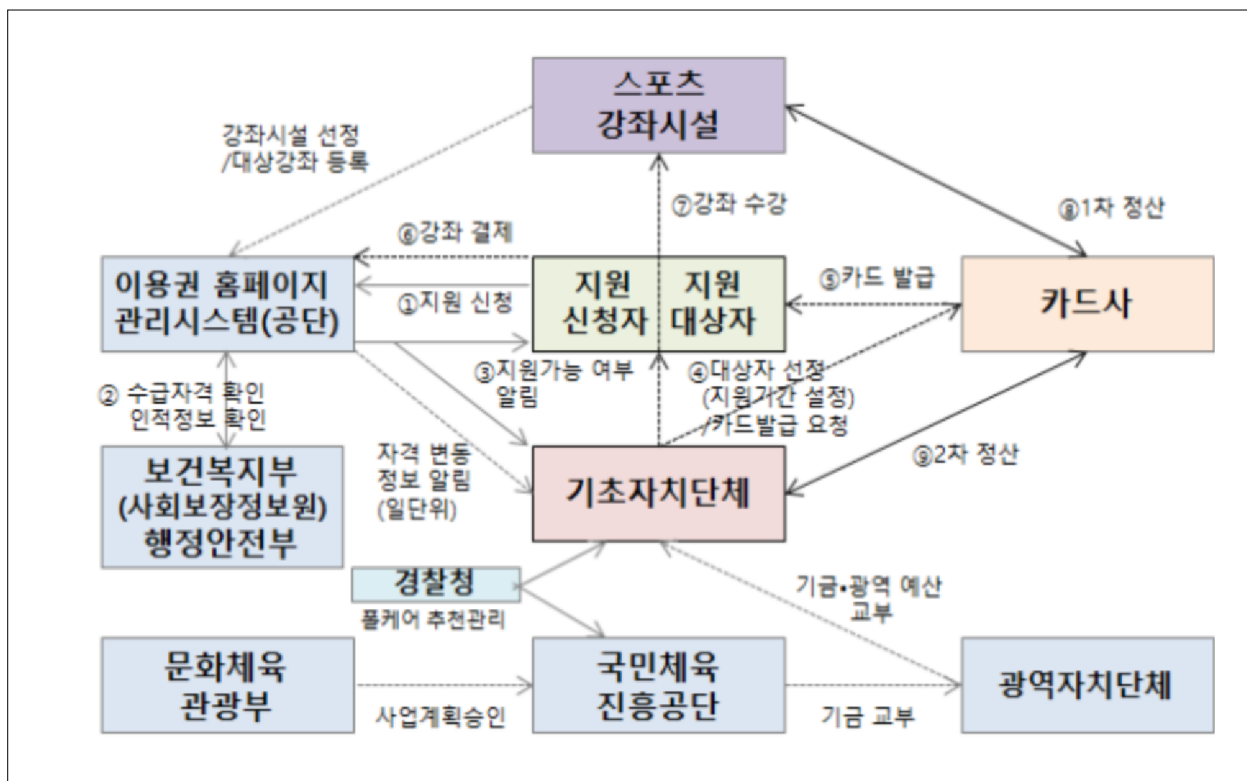
- 스포츠강좌 : 1,868명 × 10만5천 원 × 12월
- 장애인스포츠강좌 : 272명 × 11만원 × 12월

□ 사업예산

(단위: 천 원)

구 분	합계	국(70%)	시(15%)	구(15%)
스포츠강좌	2,353,680	1,647,576	353,052	353,052
장애인스포츠강좌	359,040	251,328	53,856	53,856

□ [참고] 사업추진 체계(업무처리 절차)



□ 2025년 지원대상자 선정

- 신청기간 : 2024. 11. 8.(금) ~ 11. 29.(금) (전국 동시신청)
- 신청방법 : (장애인)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온라인 및 서면 신청
- 대상선정 : 2024. 12. 2.(월) ~ 12. 12.(목)
- 선정인원
 - (일반 1,868명) 월 10만5천원 이내 복수강좌 12개월 지원
 - (장애인 272명) 월 11만원 이내 복수강좌 12개월 지원
- 선정방법 : 선정기준*에 따라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
 - * 선정기준 : 스포츠강좌이용권 누적 지원기간, 소득, 범죄피해 여부

□ 선정기준

- 스포츠강좌이용권

선정순위	누적 이용기간	수급자격
우선선정	제한없음	경찰청 추천, 범죄피해가정(학교·가정·성폭력)
1순위	신규 및 30개월* 미만	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
2순위	신규 및 30개월* 미만	차상위계층, 법정 한부모 가족
3순위	30개월 이상	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
4순위	30개월 이상	차상위계층, 법정 한부모 가족

* 스포츠강좌이용권 과거 4년도(2021~2024년도) 누적 결제 횟수

< 중복지원 제한 >

- (공단)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수혜자 지원 불가
- (복지부)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수혜자 지원 불가

○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

선정순위	수급자격
1순위	5~18세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, 차상위 계층, 법정 한부모가족
2순위	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)
3순위	차상위 계층, 법정 한부모 가족
4순위	비 저소득층

※ 동순위 내 우선 선정시 1)장애중증도 2)저소득 3)고연령 순으로 결정

< 중복지원 제한 >

- (공단)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수혜자 지원 불가
- (복지부)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수혜자 지원 불가
-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수혜자 지원 불가
-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수혜자 지원 불가

□ 강좌시설 선정

○ 신청 및 선정 : 연 중

○ 신청자격

-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
- 대한체육회·대한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종목 등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강좌시설
- 생활체육진흥법 또는 스포츠클럽법에 근거하고 대한체육회에서 선정한 공공스포츠클럽
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(외부 협력 체육시설 활용 가능)
- 장애인 전용체육시설 및 기타 강좌제공 가능 시설
(예시: 발달센터, 장애인자립생활센터, 재활스포츠센터 등)

○ 선정방법 : 시설 신청 접수 시, 기준 확인 후 구에서 선정

- (장애인)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(모바일 웹 포함)를 통해 신청

○ 시설등록 선정 시 확인사항

필수(의무) 확인사항	○ 월 강습형태의 스포츠강좌* 제공 여부 - 스포츠종목 외 학업지원을 위한 강좌시설 신청·선정 불가 (국어·영어·수학·음악·미술·서예·한자·풍물·블록조립 등) * 단, 강습 형태에 있어 월단위로 제공되는 '헬스(웨이트트레이닝), 자유수영 등' 지속적 스포츠활동이 가능하고 출석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 직권으로 승인가능 ○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시설만 승인 ○ '무용, 댄스' 종목 중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여부 확인 (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등록 제한) ○ 스포츠강좌 운영에 적합한 시설·부지 확보 여부 ○ 시설환경안정성 및 서비스 제공능력 보유여부(인력·경험·장비 등) - 현장점검, 사진 등 지자체 자율적인 방법으로 확인 - 실시간 온라인 강좌서비스 제공가능 여부(비대면 강좌제공시설) 등
추가 확인사항	○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 운영 여부 - 시설명·운영지역 등 단순변경은 기존 운영기간 인정 ○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시설 및 안전 안내서가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(쉬운 용어사용 등) ○ 책임보험 가입 여부 ○ 소규모 체육시설 자율안전점검 이행여부

IV

행정사항

○ (자체홍보) 구 홈페이지, SNS 등 홍보

○ (행정복지센터) 포스터 부착, 동 홈페이지 등 홍보 요청

붙임 1. (장애인)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및 선정계획 각 1부.

2. (장애인)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서(양식) 각 1부. 끝.